

상급병실차액 지급기준

<개정 2004.3.29., 2005.1.4., 2009.9.3., 2013.7.1., 2016.3.1.>

상급병실 차액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간
①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2016.3.1.부터 적용)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 부지급 ※ 2내지 4인실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특실, 1인실 제외) - 2012.1.1.부터 2016.2.29.까지 적용	매입원시 입원 초일부터 7일 이내
②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5조(상급병실 사용)제1항에 의한 상병상태에 사용한 경우(특실 제외)	연속된 25일 이내

① 2012.1.1.부터 2016.2.29.까지 상급병실 인정기준

-일반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2내지 4인실 7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ex) 일반병실이 없어서 4인실을 쓰다가 환자가 원하여 2인실로 전실한 경우 7일 이내에 4인실 사용기간만 지급

② 상급병실 사용요건(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5조(상급병실 사용)제1항

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중 제거술 등으로 절대 안정을 요하는 경우
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3. 간이식 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 투여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4.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연속된 25일 이내로 하며, 상급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 사용을 인정하며,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인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상병상태가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여 사용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i)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ii) 상병상태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